

## 미디어 발표

2014 년 3 월 3 일

###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

Fair Work Ombudsman 은 호주의 한국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 - 특히 최저 임금 액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

Fair Work 조사관들은 최근에 일부 한국인 고용인들이 시간당 \$8 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. 현재 호주 전국 시간당 최저 임금은 \$16.37, 또는 주당 \$622.20 입니다. 비정규 고용인의 경우 호주 전국 최저 임금은 \$20.30 입니다.

Fair Work Ombudsman 의 나탈리 제임스씨는 외국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고용인들은 직장에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.

“모든 고용인들은 호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최저 임금 및 기타 다양한 직장에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”고 나탈리씨는 말하였습니다.

“Fair Work Ombudsman 의 주요한 역할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지, 또는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 지를 포함하여 각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데 있습니다.”

비영어권 구사자인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안내 정보가 한국어를 포함하여 27 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, 그 내용은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 [www.fairwork.gov.au/languages](http://www.fairwork.gov.au/languages) 에 실려 있습니다.

Fair Work Ombudsman 은 고용인들에게 직장에서의 권리에 대하여 교육함은 물론 고용인의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호주의 직장법을 준수하도록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부 기관은 지난 회계연도에 2 천명이 넘는 비자 소지자를 위해 140 만 달러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.

최근에 시드니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한 한국인 고용인의 경우 9 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았던 것을 Fair Work 조사관이 밝혀낸 후 \$12,100 을 소급하여 지급 받았습니다.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 그 웨이더는 시급으로 최저 임금 이하인 \$15 을 받았으며 이는 주말 시간외 수당에 못미치는 금액입니다.

위와는 별도로 시드니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10 명의 노동자 - 이들 대부분은 젊은 한국인 - 들의 경우, 2012 년에 고용주가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종결하는 시점에서 남아 있던 연차 휴가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은 결과 총 \$5900 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습니다.

위의 두 고용주 모두가 조사관에 협조하여 해당 고용인들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자발적으로 모두 지급함에 따라 Fair Work Ombudsman 이 추가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

제임스씨는 Fair Work Ombudsman 은 호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.

퀸즐랜드에서 기준 이하의 급여를 받은 데 대한 문제가 있는 후 백패커를 포함한 계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권리를 교육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은 약 30 만명에 달했습니다. 페이스북 메시지도 6500 명에 달하였습니다.

Fair Work Ombudsman 이 고용인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가 지급된 것을 밝혀낼 경우, 언제나 가장 먼저 희망하는 것은 고용주와 협력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 실수를 정정하여 해당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입니다.

그러나, 고용주가 고의로 직장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Fair Work 조사관에 협력하기를 거부할 경우 Fair Work Ombudsman 은 법적 소송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을 집행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지금까지 법원이 내린 최고 벌금 액수는 작년 9 월 퍼스의 청소회사와 그 관리인을 상대로 한 \$343,860 이었는데, 이들은 대만과 홍콩, 뉴질랜드, 아일랜드에서 온 5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6 명의 청소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직장법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원하시면 [www.fairwork.gov.au](http://www.fairwork.gov.au) 를 참고하시거나 또는 Fair Work 정보전화 13 13 94 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무료 통역 서비스는 13 14 50 번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미디어 문의: Tom McPherson, 0439 835 855, [tom.mcpherson@fwo.gov.au](mailto:tom.mcpherson@fwo.gov.au)